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차규근 · 권칠승 · 박은정
김준형 · 정춘생 · 이해민
강경숙 · 김재원 · 김선민
박해철 · 이상식 · 이재정
용혜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 · 행정 · 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법 · 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음.

반면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결정)에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주요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법률로 규율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노력과 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발맞추어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를 “대구광역시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속기관의 소재지) 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의 부속기관은 대법원 소재지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부속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분원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u>서울특별시에</u> 둔다. <u><신 설></u>	제12조(소재지) ----- <u>대구광역시에</u> -----. <u>제12조의2(부속기관의 소재지)</u> ① <u>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의 부속기관은 대법원 소재지에 둔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u> ③ <u>부속기관의 구체적인 위치, 분원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